

Deloitte.

노동 뉴스레터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관한
제152/2020/ND-CP호 시행령을 수정 및 보완하는
제70/2023/ND-CP호 신규 시행령

2023년 9월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관한 제152/2020/ND-CP호 시행령을 수정 및 보완하는 제70/2023/ND-CP호 신규 시행령

베트남 정부는 2023년 5월 24일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유치하기 위한 업무 및 솔루션에 관한 제14/CT-TTg호 지침을 수행하기 위해 2023년 9월 18일에 제70/2023/ND-CP호 시행령 ("제70호 시행령")을 발표하여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관리 및 노동허가를 규정한 제152/2020/ND-CP호 시행령 ("제152호 시행령")을 대체한다. 제70호 시행령은 2023년 9월 18일부터 유효되며 주목할 만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제152호 시행령

제70호 시행령

I. 외국인 사용수요 승인 신청 ("FLDR") 업데이트 - 채용직책 승인 절차

1.1 외국인 근로자 고용 예정인 직책에 대하여 베트남 근로자를 채용공고에 대한 추가 요건

규정: 외국인 사용수요 승인 신청 제출 전 채용공고에 필요없다.

실무: 현재 호치민시의 신청에만 채택되었으며 노동부에서 결정한 특정 유형의 법인에만 적용된다. 고용주는 베트남인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공고를 게시했지만 자격을 갖춘 지원자를 찾지 못 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2024년 1월 1일부터 고용주는 외국인 사용수요 승인 신청서를 노동당국에 제출 최소 15일 전에 노동부의 전자 포털 (고용청) 또는 지방 고용 서비스 센터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예정인 직책에 대하여 베트남 근로자 고용공고를 게시해야 한다.

딜로이트의 관점: 이 규정은 현지 근로자의 취업 기회를 보호하는 정부의 주장에 부합한다. 예상영향은 아래와 같다:

- ✓ 외국인 사용수요 승인 신청 준비는 추가 채용 공고 프로세스로 인해 더 복잡하고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 ✓ 베트남 코로나 채용 결과 및 프로세스 증명/설명은 외국인 근로자의 직책에 대한 유관기관의 평가 및 승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2 외국인 사용수요 승인 신청에 대한 타임라인 변경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 시작 예정일로부터 최소 30일 전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 시작 예정일로부터 최소 15일 전

딜로이트의 관점: 이번경은 고용주가 외국인 사용수요 승인 신청하기 전에 베트남 근로자 채용공고 절차의 수행 기간을 15일로 줄이게 한다.

1.3 베트남인의 배우자인 외국인 근로자 채용의 경우 외국인 사용수요 승인 신청이 더 이상 필요없다

- 외국인 사용수요 승인 신청 및 노동 허가 면제 외국인 근로자 보고서 필요
- 외국인 사용수요 승인 신청 및 노동 허가 면제 외국인 근로자 보고서에 대한 요청사항 폐지
- 노동 허가 면제 신청 불필요
-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 시작 예정일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노동 허가 면제 승인 대상자임을 승인받아야 한다

딜로이트의 관점: 이러한 긍정적인 변경은 행정절차에 대한 시간과 부담을 줄이고, 대상인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인 사용수요 승인을 기다릴 필요없이 더 일찍 회사에 입사할 수 있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 시작 예정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이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II. 노동허가서 신청 절차에 대한 업데이트

2.1 학력은 베트남에서 근무할 예정인 업무와 직책에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외국인 근로자의 전공 학력 또는 경력은 베트남에서 근무할 예정인 업무와 직책에 부합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전공 학력이 **베트남에서 근무할 예정인 업무와 직책에 부합해야 한다는 조건이 폐지된다.** 경력에 대한 조건만 충족해야 한다.

딜로이트의 관점: 이 규정 업데이트는 학력 자격이 더 이상 베트남에서 근무할 예정인 업무와 직책과 엄격하게 연결되지 않는 글로벌 인력 추세에 부합한다. 대신에, 노동허가 신청평가과정에서 적절한 경험이 더 우선시 될 것이다. 이는 상당한 긍정적인 변경이며 노동허가 발급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고 베트남 기업의 채용을 위한 지원자 범위를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관한 제152/2020/ND-CP호 시행령을 수정 및 보완하는 제70/2023/ND-CP호 신규 시행령

제152호 시행령

제70호 시행령

II. 노동허가서 신청 절차 업데이트 (cont')

2.2 노동허가서 신청시 제출 서류에 대한 업데이트

관리자, 운영책임자의 경우

제152호 시행령은 이러한 직책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다. 실무상 지역 노동청은 아래와 같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적용)

- 회사 정관/운영 규정
- 고용주 단체의 설립을 증명하는 법적 문서 (예: 사업자등록증명서 등)
- 임명 결정서
- 관련 경력을 증명하기 위한 학력 증명서 및 근무경력 증명서류 (이는 일부 지역 노동청에 의해 추가로 요청되는 사항이다)

신청서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아래 03개의 문서가 포함된다:

- 회사 정관/운영 규정
- 고용주 단체의 설립을 증명하는 법적 문서
- 단체/기업의 임명 결정서

학력 증명서 및 근무경력 증명서류가 필요하지 않다.

전문가, 기술자의 경우

- 학위증, 자격증, 및
- 경력확인서,

해당되는 경우 다음 02 문서를 사용 가능하다:

- 학위 또는 졸업장 또는 **자격증**, 및
- 해외업체에 의해 발급된 경력증명서 또는 **과거에 발급된 노동허가서/ 노동 허가 면제 확인서**

딜로이트의 관점: 새로운 시행령상 대체 증명서류인 "자격증" 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지만 저희 경험상으로 졸업장/수로 증명서가 학위 (해당 경우)를 대체 사용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노동허가 발급 증명서류의 더 증가한 유연성은 행정 절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행정적인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2.3 노동허가서상 모든 근무지를 충분히 기재해야 하는 요구 사항

제152호 시행령상 이 내용을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다. 특정 지역의 관행에 따르면 같은 고용주의 여러가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 노동허가 신청서상 같은 도시/성의 모든 근무지를 기재해야할 수도 있다.
- 근무지가 다른 도시/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신규 노동 허가**를 신청해야 할 수도 있다.

노동허가 신청서상 같은 고용주의 지점, 대표 사무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근무지가 **기재되어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해당된다:

- 같은 도시/성내의 근무지: 노동허가는 노동청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여러가지의 도시/성에서의 근무지: 노동허가는 노동부에 의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외국인의 근무 시작일로부터 근무일 3일 이내에 온라인 포털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정보와 근무 상태를 노동부 및 근로자의 근무지역의 노동청에 보고해야 한다.

딜로이트의 관점: 이는 추가적인 보고 요구 사항이어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하나의 노동허가서로 같은 고용주의 여러가지의 근무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 절차와 시간을 간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Contact Us



Thomas McClelland
National Tax Lead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Bui Tuan Minh
Tax Partn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 105 0023
ngavu@deloitte.com



Tat Hong Quan
Tax Partner
+84 28 7101 4341
quantat@deloitte.com



Vu Thu Ha
Tax Partner
+84 24 710 50024
hatvu@deloitte.com



Dang Mai Kim Ngan
Tax Partner
+84 28 710 14351
ngandang@deloitte.com



Son Won Sik
KSG Director
+84 93 445 6850
wonsikson@deloitte.com



Bob Fletcher
Director, Trade and Customs
+84 28 7101 4398
fletcherbob@deloitte.com

Hanoi Office

15th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Ho Chi Minh City Office

18th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each of which may be referred to or known as Deloitte Vietna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